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54
----------	-------

발의연월일 : 2018. 12. 21.

발 의 자 : 이원욱·김현권·정세균
김병기·강훈식·이후삼
김영진·안호영·김철민
우원식·홍의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고, 소비자 역시 특정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에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친환경적인 제품 선택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임.

이에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3(신·재생에너지 이용 사업자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생산 과정에서 상당량 이상의 전기를 소모하는 제품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제품의 종류, 인증의 등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조의3(신·재생에너지 이용 사업자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생산 과정에서 상당량 이상의 전기를 소모하는 제품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u></p> <p><u>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u></p> <p><u>④ 제1항에 따른 제품의 종류, 인증의 등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p>